

의안번호	제 41 호
의결연월일	2003. . .

의결사항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2003. 11. 28.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일자 : 2003. 11. 28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 규정에 근거하여투자기업에 대한 공장부지 50% 대부지원 제도 규정 신설.
- 나.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390호 부칙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투자유치 및 지원의 근거 유지.

2. 주요골자

- 가. 국내·외 투자기업에 공장부지의 50% 매입 대부 규정 신설
(안 제19조의1).
- 나. 조례 유효기간 삭제 : 조례 제390호(99.10.26) 부칙에 규정된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삭제(안 부칙).

3. 법적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22호
- 다.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9항제2호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담당관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03. 10. 31 ~ 11. 19

나) 예고방법 :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다) 접수의견 :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19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①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장 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사천시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례 제390호 사천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9조의1<신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390호)</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u> <u>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u></p>	<p><u>제19조의1(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u></p> <p><u>① 시장은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u> <u>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u> <u>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u> <u>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u> <u>범위 내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u> <u>대부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u> <u>제반 사항은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u> <u>규정을 준용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조례 제390호)</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관계법령 발취

지방재정법

第83條 (雜種財産의 管理 및 處分) ②雜種財産의 貸付·賣却·交換·讓與·信託 및 私權設定에 관한사항과 貸付料率, 貸付料의 算定方法, 貸付料의 減免, 價格評價, 賣却代金納付方法, 代物辨濟의 범위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 (잡종재산의 대부)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

2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사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⑨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의10이상으로 한다.

2.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